

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발의자 : 김은영 의원

발의일 : 2021. 11.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 공포, 2022. 1. 13. 시행)에 따라 「지방자치법」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5분 자유발언의 발언 시기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, 의원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 변경 및 개정사항 반영
 - 표결방법(기록표결)에 관한 사항(안 제49조)
 - 회의록의 주민 공개에 관한 사항(안 제56조)
 -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에 관한 사항(안 제63조)
 -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(안 제61조의2)
 -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(안 제61조의3)
- 나.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(안 제39조1항)

3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「지방자치법」 개정(2022. 1. 13.시행)에 따라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률 및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,
 -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